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3. ~ 8. 14., 2023. 9.00 ~ 1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5조제7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란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란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현행	개정안
	<u>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472